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34
------	------

2020. 4. 23.  
기획경제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4월 3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2020.4.23.)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조정실장 조인동)

#### 1. 제안이유

가. 소방기능 강화,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의회 인력 보강을 위해 집행기관 정원 12명을 시의회사무처 정원으로 이관함(안 제2조)

1) 집 행 기 관 : 10,415명 → 10,403명(△12)

2) 시의회사무처 : 333명 → 345명(+12)

나. 직급별 기준 비율을 조정함(안 별표 2)

1) 전문경력관 정원의 상한을 1%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

2) 8급 이하의 정원의 하한을 11% 이상에서 10.5% 이상으로 하향

다. 교통방송이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로 재단화됨에 따라, 교통방송 대표직의 정원인 3급 정원 1명을 감축함(안 별표 4)

라. 감염병 전담센터 설치를 위해 4급 정원 1명을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이관함(안 별표 4)

마. 「소방공무원법」 등 상위법령 개정 및 소방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 공무원을 141명 증원함(안 별표 5)

- 소방령 +2, 소방경 +4, 소방위 +41, 소방장 +34, 소방교 +32, 소방사 +28

##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집행기관 정원 12명을 시의회사무처로 이관하고, 행정환경의 복잡·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경력관 정원 비율을 1.5% 이내로 상향하며, 교통방송이 재단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통방송 대표(개방형 3급) 1명을 감원하고, 감염병전담센터장 신설을 위해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4급 정원 1명을 이관하며, 「소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반영해 소방공무원 141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되었음.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수는 총 18,562명에서 140명 증원된 18,702명임.

#### 나. 의회사무처 정원 증원(+12명)

- 개정안은 교통방송 폐지에 따라 확보된 정원(164명)을 활용해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청사 방호 및 유지관리, 스피치라이트를 위한 인력 12명을 증원하고 있음.
- 이중 10명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9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 7급으로 각각 1명씩 배치될 예정임.
  - 이는 제9대 의회 동기대비 의원발의 건수가 47%(160건) 이상 증가하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청년청 등 서울시 조직과 사회서비스원 등 출연기관이 신설되어 상임위원회 업무가 대폭 증가한데 기인함.
- 또한 청사방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방호직 7급 1명의 증원과 청사 유지관리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관리운영직군인 건축운영 7급을 기술직인 건축 7급으로의 전환을 요청했음.
  - 현재 시의회 방호업무는 방호직 9명, 공공안전관(공무직) 1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의 개정<sup>1)</sup>에 따라 공공안전관의 근무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어 교대근무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활한 청사방호를 위해서는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 건축 7급으로 전환되는 건축운영 7급은 관리운영직군의 점진적 폐지방침<sup>1)</sup>으로 현재 공석인 상태로, 앞으로 시의회 별관 청사의 리모델링 등에 대비할 예정임.
- 이 밖에 서울시의회 의정철학과 비전을 현안메시지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스피치라이트 요원의 확보를 위해 임기제 6급 1명 증원을 요청했음.
- 이는 의정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난이도를 요구하는 연설문과 언론자료 등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임.

<최근 5년간 인사말씀, 기고문 등 자료작성 건수>

(단위: 건)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소요기간
총 계	270	302	576	336	578	
연설문 (개회사, 신년사 등)	-	3	6	8	7	최소 5일
언론자료 (인터뷰 기고 보도자료 등)	-	52	31	67	104	최소 3일
인사말씀 (현장축사, 서면축사)	270	247	539	261	467	1일

1) 정부는 공무원 직군의 일원화를 위해 「지방공무원법」을 개정·시행(2013.3.12.) 하였으며, 1단계로 기능직공무원의 폐지 후 관리운영직군으로 전환, 2단계로 관리운영직군을 일반직 또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하여 관리운영직군은 점진적으로 폐지될 예정임.

#### 다. 전문경력관 정원 상한 비율 조정(1.0% → 1.5% 이내)

- 개정안은 전문경력관 정원의 상한 비율을 종전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있음.
- 전문경력관은 일반직공무원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써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재직 등이 필요한 경우에 계급 구분, 직군과 직렬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특수업무 분야 종사자임<sup>2)</sup>.
- 현재 비상대비, 민방위, 항공관독 등 31개 직무에서 104명의 전문경력관을 운영하고 있음.

#### <전문경력관 지정 가능 분야(예시)>

사진·영상 촬영, 청소년 수련·지도, 체육진흥·지도, 직업·기능훈련, 생활보육 지도, 생활관 사감, 농기계 교육·수리, 항공사진 촬영·관독, 경제분석·리서치, 교역통상, 투자 유치 협상, 통계지표 개발 및 통계프로그램 사용, 비상대비 및 예비군, 화생방, 시청각 기자재 관리, 통번역, 무대 공연·전시, 인쇄·발간, 나병관리 업무 등

※ 출처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98호)

- 개정안은 일반직 8급 이하 공무원 정원 비율을 하향조정(11% 이상 → 10.5% 이상)하고, 전문경력관 비율을 높여 서울대공원 동물원 사육사, 특수차량 정비 등 기존에 관리운영직군으로 운영되던 분야의 인력 충원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2) 직위는 직무의 특성과 난이도·숙련도에 따라 가, 나, 다 군으로 구분되며, 신분보장, 교육, 복무는 동일하나 계급구분, 임용, 보수에서 일부 특례를 인정받음

- 이는 동물원사육사, 고압전기·가스, 위험물 취급, 약물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을 가진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경력관 제도의 장점을 살리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임.

#### 라. 교통방송 대표직 3급 정원 감축(△1명)

- 개정안은 교통방송이 폐지되고 ‘미디어재단tbs’가 신설(2020.2.17.)됨에 따라 교통방송 대표직인 개방직 3급 정원 1명을 그대로 감축<sup>3)</sup>하고 있음.
- 현재 행정안전부로부터 한시기구와 임시기구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설립으로 감축되는 3급 정원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소 소속의 3급 정원을 본청에 배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기구 수를 초과하고, 새로운 기구나 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곤란함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 그러나 교통방송의 재단화는 2015년부터 추진되었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2019.7.18.) 후 재단설립과 소속 직원의 신분전환이 6개월 이상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사전협의를 진행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임.

---

3) 기존에 교통방송은 시장 산하의 사업소로 운영되어 왔으며, 그 대표직은 개방직 3급 공무원으로 임명되었음.

#### 마. 감염병전담센터장 증원(+1명)

-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종감염병에 대비하는 감염병 전담센터(가칭 “감염병연구센터”)를 보건환경연구원 산하 4급 부서로 신설하기 위해 센터장 4급 1명 정원을 사업소에서 직속기구로 이관할 계획임.
- 감염병연구센터는 화학물질, 바이러스 등을 직접 다루기 보다는 감염병 발생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직으로, 주로 감염병 정보 분석, 외국 감염병 사례 수집, 감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방법 및 환자 치료에 필요한 사항 등을 연구할 예정임.
- 최근 메르스(2015)나 코로나19(2020)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 차원의 전담 연구 기구를 설치하여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감염병 연구는 보건환경연구원 외에도 본청의 시민건강국, 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등 다양한 조직에서 수행 가능하므로, 이들 조직의 감염병 대응 전문성과 역량, 의료인프라 등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적의 설치 부서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감염병연구센터를 설치할 조직을 현재까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감염병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합한 전담 소속 부서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바. 「소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소방공무원 증원(+141명)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소방공무원정원 시행규칙”)이 서울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7,196명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임.
-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2020.4.1. 시행)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으나, 시·도별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한 「소방공무원정원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중인 관계로 증가된 정원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지 못했음.
- 이번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기존 7,055명에서 141명 증원된 7,196명이 되어 「소방공무원정원 시행규칙」과 동일해 졌으며, 확보된 정원은 소방재난본부 8명, 종합방재센터 3명, 119 특수구조단 36명, 지역별 소방서 91명, 소방학교 3명이 각각 배치될 예정임.

## 사. 종합의견

- 개정안은 교통방송의 재단법인 전환에 따라 확보된 유휴정원의 일부를 시의회와 감염병전담센터로 이관하고, 교통방송 대표직 3급 정원을 감축하며, 관리운영직군의 점차적 폐지에 따른 결원을 전문경력관 비율을 상향해 활용하고, 「소방공무원정원 시행규칙」의 제정에 맞춰 소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 있음.
- 이는 기구 폐지와 소속직원의 신분변동사항을 정원에 적기 반영하고,



코로나19 등 현안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것임.

- 다만, 1년여에 걸쳐 진행된 교통방송의 폐지와 재단법인 전환과정에서 대표직인 3급 정원의 활용이 고려되지 않은 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설치할 조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센터장 정원을 조례에 반영한 문제점이 있음.
- 한편, 2020년 인력운영비 예산편성액은 1조 8,210억원<sup>4)</sup>으로 기준인건비 1조 8,616억원 대비 406억원 여유가 있으며, 이번 소방직 141명의 증원과 개방직 3급 1명 감원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인건비 약 114억원을 포함하면 약 292억원의 여유가 예상됨.

---

4) 당초 인력운영비 편성액은 1조 8,209억원이었으나 제291회 임시회에서 추가된 행정4급 1명의 인력운영비 1억 2천만원을 포함한 금액임.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수정안요지

##### 가. 수정이유

- 가칭 감염병전담센터의 소속 부서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센터장 정원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려는 4급 정원 1명을 감축함.

#####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4급 정원 1명을 감축함(안 제2조 및 별표 4).

####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34
----------	---------

제안년월일 : 2020년 4월 23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 1. 수정이유

- 가칭 감염병전담센터의 소속 부서에 대한 의견 수렴 없이 센터장 정원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업소에서 직속 기관으로 이관하려는 4급 정원 1명을 감축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사업소에서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4급 정원 1명을 감축함(안 제2조 및 별표 4).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8,702명”을 “18,70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0,403명”을 “10,402명”으로 한다.

안 [별표 4] 중 총계란, 일반직 계란 및 4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총계	11,505					
----	--------	--	--	--	--	--

일반직계	10,535					
------	--------	--	--	--	--	--

4급	246	146	17	8	66	9
----	-----	-----	----	---	----	---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한다) 정원의 총수는 <b>18,562명</b>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 <b>10,416명</b></p> <p>2.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 : <b>7,055명</b></p> <p>3. (생략)</p> <p>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b>333명</b></p> <p>5. (생략)</p> <p><b>【별표 4】</b>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p> <p>-----</p> <p><b>18,702명</b>-----</p> <p>-----.</p> <p>1. -----</p> <p>-----</p> <p>-----</p> <p>----- <b>10,403명</b></p> <p>2. 본청·소방학교·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 : <b>7,196명</b></p> <p>3. (현행과 같음)</p> <p>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b>345명</b></p> <p>5. (현행과 같음)</p> <p><b>【별표 4】</b>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p>	<p>제2조(정원의 총수) ---</p> <p>-----</p> <p>-----</p> <p>-----</p> <p><b>18,701명</b>-----</p> <p>-----.</p> <p>1. -----</p> <p>-----</p> <p>-----</p> <p>----- <b>10,402명</b></p> <p>2. ~ 5. (개정안과 같음)</p> <p><b>【별표 4】</b>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처</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b>1157</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 생 략 )</td> </tr> <tr> <td>일반직계</td> <td><b>1057</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 생 략 )</td> </tr> <tr> <td>4급</td> <td><b>247</b></td> <td>146</td> <td>17</td> <td><b>8</b></td> <td><b>67</b></td> <td>9</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 생 략 )</td> </tr> </tbody> </table>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b>1157</b>						( 생 략 )							일반직계	<b>1057</b>						( 생 략 )							4급	<b>247</b>	146	17	<b>8</b>	<b>67</b>	9	( 생 략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처</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b>1136</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 생 략 )</td> </tr> <tr> <td>일반직계</td> <td><b>1036</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 생 략 )</td> </tr> <tr> <td>4급</td> <td><b>247</b></td> <td>146</td> <td>17</td> <td><b>9</b></td> <td><b>66</b></td> <td>9</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 생 략 )</td> </tr> </tbody> </table>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b>1136</b>						( 생 략 )							일반직계	<b>1036</b>						( 생 략 )							4급	<b>247</b>	146	17	<b>9</b>	<b>66</b>	9	( 생 략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본청</th> <th>의회사무처</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합의제행정기관</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b>1135</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 생 략 )</td> </tr> <tr> <td>일반직계</td> <td><b>1035</b></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 생 략 )</td> </tr> <tr> <td>4급</td> <td><b>246</b></td> <td>146</td> <td>17</td> <td><b>8</b></td> <td><b>66</b></td> <td>9</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 생 략 )</td> </tr> </tbody> </table>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b>1135</b>						( 생 략 )							일반직계	<b>1035</b>						( 생 략 )							4급	<b>246</b>	146	17	<b>8</b>	<b>66</b>	9	( 생 략 )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b>1157</b>																																																																																																																																																				
( 생 략 )																																																																																																																																																					
일반직계	<b>1057</b>																																																																																																																																																				
( 생 략 )																																																																																																																																																					
4급	<b>247</b>	146	17	<b>8</b>	<b>67</b>	9																																																																																																																																															
( 생 략 )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b>1136</b>																																																																																																																																																				
( 생 략 )																																																																																																																																																					
일반직계	<b>1036</b>																																																																																																																																																				
( 생 략 )																																																																																																																																																					
4급	<b>247</b>	146	17	<b>9</b>	<b>66</b>	9																																																																																																																																															
( 생 략 )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b>1135</b>																																																																																																																																																				
( 생 략 )																																																																																																																																																					
일반직계	<b>1035</b>																																																																																																																																																				
( 생 략 )																																																																																																																																																					
4급	<b>246</b>	146	17	<b>8</b>	<b>66</b>	9																																																																																																																																															
( 생 략 )																																																																																																																																																					

##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8,562명”을 “18,70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10,416명”을 “10,40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7,055명”을 “7,196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333명”을 “345명”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4.5%이내	34.5%이내	35.5%이내	10.5%이상	1.5%이내

[별표 4] 중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계	11,505					
----	--------	--	--	--	--	--

같은 표 일반직 계란, 3급란, 4급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계	10,535					
------	--------	--	--	--	--	--

3급	19	10		1	8	
----	----	----	--	---	---	--

4급	246	146	17	8	66	9
----	-----	-----	----	---	----	---

[별표 5] 중 소방공무원 계란, 소방령 이하 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계	7,196	
------	-------	--

일반직계	7,161	
------	-------	--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한다) 정원의 총수는 <u>18,562명</u>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 <u>10,416명</u></p> <p>2. 본청 · 소방학교 · 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 : <u>7,055명</u></p> <p>3. (생략)</p> <p>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u>333명</u></p> <p>5. (생략)</p> <p>[별표 2]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4급 이상</td> <td>5급</td> <td>6급</td> <td>7급</td> <td>8급·9급</td> <td>전문경력관</td> </tr> <tr> <td>비율</td> <td>35%이내</td> <td>14.5%이내</td> <td>34.5%이내</td> <td>35.5%이내</td> <td><b>11%이상</b></td> <td><b>1%이내</b></td> </tr> </table> <p>2. ~ 4. (생략)</p> <p>[별표 4]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p>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4.5%이내	34.5%이내	35.5%이내	<b>11%이상</b>	<b>1%이내</b>	<p>제2조(정원의 총수) ----- ----- ----- <u>18,701명</u> ----- -----.</p> <p>1. ----- ----- <u>10,402명</u></p> <p>2. ----- -----: <u>7,196명</u></p> <p>3. (현행과 같음)</p> <p>4. ----- <u>345명</u></p> <p>5. (현행과 같음)</p> <p>[별표 2]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p> <p>1. 일반직공무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4급 이상</td> <td>5급</td> <td>6급</td> <td>7급</td> <td>8급·9급</td> <td>전문경력관</td> </tr> <tr> <td>비율</td> <td>35%이내</td> <td>14.5%이내</td> <td>34.5%이내</td> <td>35.5%이내</td> <td><b>10.5%이상</b></td> <td><b>1.5%이내</b></td> </tr> </table> <p>2. ~ 4. (현행과 같음)</p> <p>[별표 4]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p>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4.5%이내	34.5%이내	35.5%이내	<b>10.5%이상</b>	<b>1.5%이내</b>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4.5%이내	34.5%이내	35.5%이내	<b>11%이상</b>	<b>1%이내</b>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율	35%이내	14.5%이내	34.5%이내	35.5%이내	<b>10.5%이상</b>	<b>1.5%이내</b>																							



현행							개정안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계	11,507						총계	11,505					
정무직계	2						정무직계	2					
시장	1	1					시장	1	1				
부시장	1	1					부시장	1	1				
일반직계	10,537						일반직계	10,535					
1급	7	6	1				1급	7	6	1			
2·3급	24	18		1	3	2	2·3급	24	18		1	3	2
3급	20	10		1	9		3급	19	10		1	8	
3·4급	5	5					3·4급	5	5				
4급	247	146	17	8	67	9	4급	246	146	17	8	66	9
4·5급	10	10					4·5급	10	10				
5급 이하 소계	10,120						5급 이하 소계	10,120					
전문경력관 소계	104						전문경력관 소계	104					
별정직계	37						별정직계	37					
4급상당	5	3	2				4급상당	5	3	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5급상당 이하 소계	32					
연구직계	387						연구직계	387					
연구관	62	4		34	24		연구관	62	4		34	24	
연구사	325						연구사	325					
지도직계	24						지도직계	24					
지도관	2			2			지도관	2			2		
지도사	22						지도사	22					
교육공무원계	520						교육공무원계	520					
총장	1			1			총장	1			1		
교수 등	450			450			교수 등	450			450		
조교	69						조교	69					

[별표 5]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2항 관련)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소방공무원계	7,055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9	2		27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계	7,020					

[별표 5]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2항 관련)

구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소방공무원계	7,196					
소방준감	5	4		1		
소방정	29	2		27		
소방정 또는 기술서기관	1			1		
소방령 이하계	7,161					